

2025년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사설 설치지원(IOT) 사업 공고

『2025년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사설 설치지원(IOT)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사업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일
단 양 군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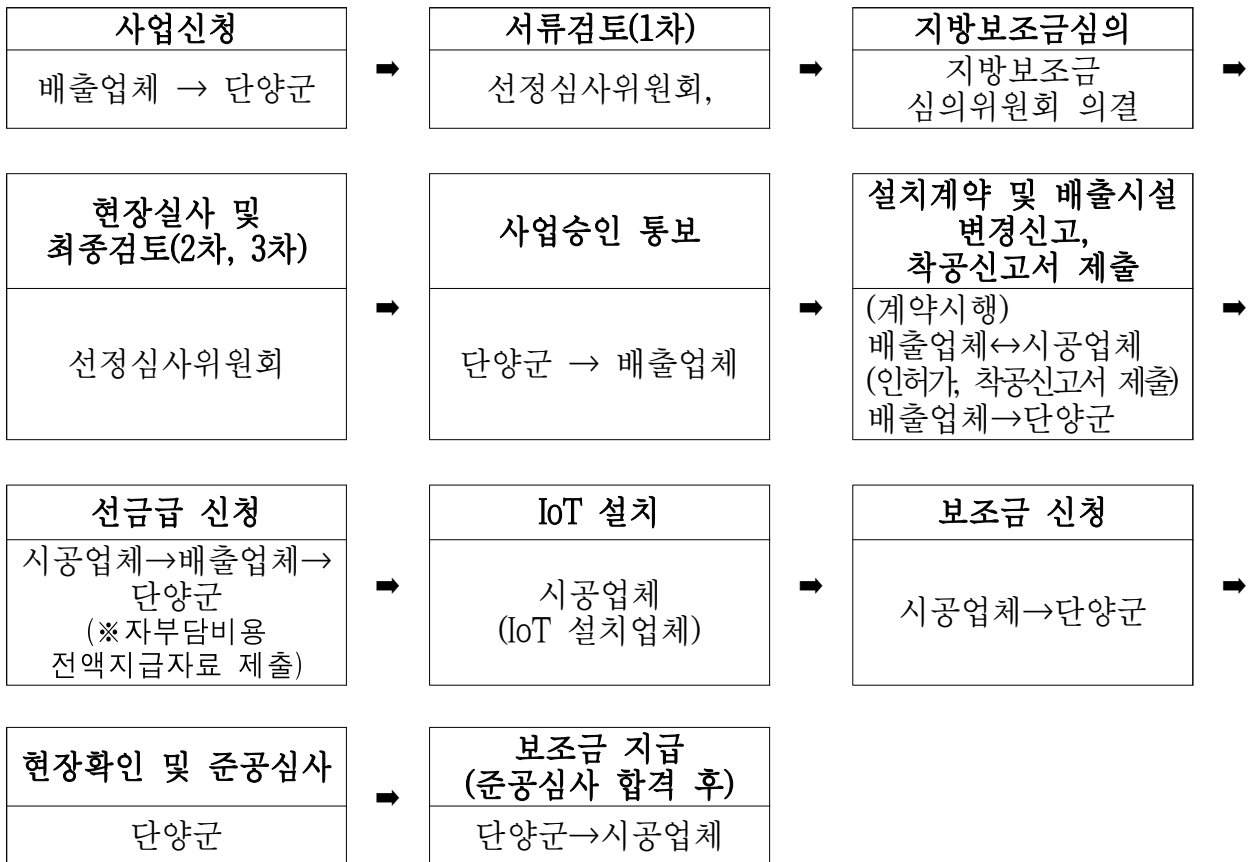
1. 사 업 명: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사설 설치지원(IOT) 사업
2. 신청기간: 공고일로부터 ~ 2025. 1. 10. 18:00까지(※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)
3. 신청방법: 방문접수
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제출(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)
4. 지원 대상 및 금액
 - (지원내용)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
 - (지원대상)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^{*}
 - *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
 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
 - (지원비율)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%(자부담 10%)
 - ※ 부가세 제외, 지원한도금액 초과금액 자부담
 - (지원한도) (붙임2) 참조

5. 지원조건 및 선정제외

(지원조건)

-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.
- 보조 사업자는 설치 전·후 오염도 개선효과 및 향후 3년간 자기측정자료 제출
 - ※ 시공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(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) 및 배출구 설치[붙임3]
- 보조 사업비에는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비용(심사비) 비용이 포함됨

6. 시행절차



7. 신청서 및 구비서류

- 지원사업 참여신청서(붙임1)
-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(붙임1의 구비서류1 서식 필히 참조)
 -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* 1부 포함

*공무원가계산서를 최신 물가정보, 적산정보, 건설·기계품셈에 맞게 작성

-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사본 1부
- 사업장 위치도(위성사진) 1부
- 사업자 등록증(보조사업자, 시공업체) 사본 각 1부
-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
-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1부
-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(해당시) 1부
- 이행확인서(보조사업자, 공사업체 각각 작성) 각 1부
-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 각 1부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보조사업자) 각 1부
- 건축물 대장, 임대차계약서(해당할 경우, 소유권 확인용) 각 1부
-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
-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-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

8. 사업비 집행

-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한 공사업체가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“보조금 지급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제출,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
- ※ 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 및 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”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%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

9. 보조금의 회수

- 준공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폐업,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

구 분	보조금 회수율
3개월 미만	80%
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70%
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60%
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	50%
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40%
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	30%
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20%

-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(예정)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
-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
- 방지시설의 양도·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
- 단,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

10. 대상자 통보 일정 및 방법

- 지원대상 선정 후 2025. 1 ~ 2월 중 사업장별 개별 통지 예정

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(☎420-26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서식)
2. 보조금 지원자료(환경부 지침)
3.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측정위치(측정공) 선정기준. 끝.